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2019. 11. 26.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39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 11. 15.(금)
- 라. 회부일자 : 2019. 11. 15.(금)

2.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의 명칭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6조제4항)
-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별표
- 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경우 종전에는 수료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
 - ▶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 신설

- 2 -

- 수수료 징수 대상의 명칭 정비
 - ▶ 별표1.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정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191(2018.6.1)】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 하는 것으로 변경(안 별표)

〈수수료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① 모범납세자 신청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금전규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4항)	: 면제	⇒ 감면 (400원)
② 징수대상 수수료 명칭 정비	: 수수료의 면제 :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수수료의 감면 ⇒ 세목별과세증명서
③ 정보공개 수수료 (변환하지않은 전자파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정)	: - 1건 1MB 이내 무료 : -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	⇒ 무료

- 3 -

<참고> 모범 납세자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 모범·유공납세자 선발기준
 - 모범납세자 :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제외)
 -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
- 우리구 모범·유공납세자 선발 현황

구 분	2019년	제증명 발급건수	비 고
모 범 납 세 자	6,480명	34건	
유 공 납 세 자	9명	0건	

- 선정방법 :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심의(지방세 전문가, 사원인 구성)

다.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 2. 22.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으로 신설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하여 2019. 1. 28. 서울특별시(세무과)로부터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제)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7조제5항에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¹⁾ 및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제)요청' [서울시 세무과 -2148(2019.01.28.)]에 따라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시키는 개정인 바,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붙임 : 관련 법령 각 1부.

1) 사용자·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 4. 1.>

- 6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9.21.]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1. 7., 2010. 7. 15., 2011. 7. 28., 2015. 10. 8., 2017. 3. 23., 2018. 12. 31.>

1.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최근 10년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

2. 전자납세자: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3.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 7 -